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6. . . (제 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보전 등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사업장 소재지에서의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하는 증빙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증빙자료의 종류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부실 예방 및 경영개선을 위해 설립된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을 은행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가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경우 사업장의 범위(안 제8조제2항)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도록 함.

나. 영세율 적용대상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명확화(안 제32조제2항제1호)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됨을 명확히 함.

다.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추가(안 제40조제3항제9호)

새마을금고 등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가 수행하는 업무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은행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함.

라. 전기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명확화(안 제69조제14항)

전기사업자가 전력 공급 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제 소비자가 서로 다른 경우 전기사업자가 명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명의자가 실제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전기사업자가 실제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는 바, 명의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전기사업자가 실제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명확화함.

마. 전력 공급 관련 부대비용 지급시의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추가(안 제69조제15항 · 제16항)

전력공급 관련 부대비용 지급시의 세금계산서 발급특례 대상에 재생

에너지 공급사업자와 유사한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 분산에너지사업자를 추가함.

바.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범위 구체화(안 제100조)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업종에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을 추가함.

사.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 입증을 위한 증빙자료 구체화(안 제119조제2항 신설)

세무서장 등이 부가가치세 납세보전 등을 위해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는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 입증을 위한 증빙자료의 범위를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기요금 등 납부내역, 근로계약서 사본, 사무실 도면, 생활서비스사업 이용내역 등으로 구체화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1. 19. ~ 2. 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제32조제2항제1호 중 “화주(貨主)”를 “화주(貨主) 또는 다른 운송주선업자”로, “화주로부터”를 “화주 또는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로 한다.

제40조제3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제45조제3호 중 “경내지(境內地) 및 경내지”를 “전통사찰보존지 및 전통사찰보존지”로 한다.

제69조제14항 중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15항 중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이하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등”이라 한다)”로, “재생에너지전기공급자”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자등”으로, “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는”을 “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등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6항부터 제21항까지를 각각 제17항부터 제22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⑥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같은 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같은 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에 전기 공급과 관련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대비용을 각각 지급하는 경우에는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한국전력거래소가 분산에너지사업자에게 각각의 부대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분산에너지사업자는 그 부대비용과 관련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각각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00조 중 “한정한다)”를 “한정한다), 미디어콘텐츠창작업”으로 한다.

제1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7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대차계약서 사본
2.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또는 통신요금 납부내역
3. 근로계약서 사본
4. 사무실 도면 또는 내·외부 사진
5. 생활물류서비스업 이용내역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료와 유사한 자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제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3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제15항·제1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사업장) ① (생략)	제8조(사업장)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표 제15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② ----- ----- ----- ----- ----- -----.
1. ~ 12. (생략)	1. ~ 12. (현행과 같음)
<u><신설></u>	13.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u>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u>
③ ~ ⑦ (생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32조(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① (생략)	제32조(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	② ----- ----- ----- -----.
1.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u>화주(貨主)</u> 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1. ----- ----- <u>화주(貨主)</u> <u>또는 다른 운송주선업자</u> ----- ----- -----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
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
송용역

2. (생 략)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
의 범위) ①·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의 사업은 제1
항제1호에 따른 은행업에 포함
되는 것으로 한다.

1. ~ 7. (생 략)

8. 삭 제

<신 설>

④ (생 략)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
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
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
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
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
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2. (생 략)

----- 화
주 또는 다른 운송주선업자로
부터 -----

2. (현행과 같음)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
의 범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7. (현행과 같음)

9.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
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④ (현행과 같음)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
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

1.·2. (현행과 같음)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을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종교단체(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로 한정하되, 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의 <u>경내지(境內地)</u> 및 <u>경내지</u> 안의 건물과 공작물의 임대용역	3. ----- ----- ----- ----- ----- ----- ----- ----- <u>전통사찰보존지 및 전통사찰보존지</u> ----- -----
4. ~ 7. (생략)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 ⑬ (생략) ⑭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4. ~ 7. (현행과 같음)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 ⑬ (현행과 같음) ⑭ ----- ----- ----- ----- ----- ----- ----- ----- ----- ----- ----- -----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⑮ 「전기사업법」에 따른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같은 법에 따른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하고 같은 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한국전력거래소에 전기 공급과 관련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대비용을 각각 지급하는 경우에는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한국전력거래소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자에게 각각의 부대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는 그 부대비용과 관련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발전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

 --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⑮ -----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 (이하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등”이라 한다)-----

 ----- 재생에너지전기공급자등-----
 ----- 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등 -----

게 각각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신 설>

①⑥ ~ ②① (생략)

-----.

①⑥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같은 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같은 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에 전기 공급과 관련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대비용을 각각 지급하는 경우에는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한국전력거래소가 분산에너지사업자에게 각각의 부대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분산에너지사업자는 그 부대비용과 관련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각각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①⑦ ~ ②② (현행 제16항부터 제21항까지와 같음)

제100조(현금매출명세서의 제출)
법 제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예식장
업, 부동산중개업, 보건업(병원
과 의원으로 한정한다)과 제109
조제2항제7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119조(질문·조사 및 명령 사
항) (생략)

<신설>

제100조(현금매출명세서의 제출)

----- 한정한다), 미디어콘
텐츠창작업-----.

제119조(질문·조사 및 명령 사
항)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7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료를 말한다.

1.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대차계
약서 사본
2.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
금 또는 통신요금 납부내역
3. 근로계약서 사본
4. 사무실 도면 또는 내·외부
사진
5. 생활물류서비스사업 이용내
역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
지의 자료와 유사한 자료

〈 의안 소관 부서명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321

